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9일,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8. 2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9. 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미애의원)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첫째, 권리침해와 무관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의해서도 이미 조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분쟁조정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임.
- 그런데 이러한 분쟁의 경우 공익적·정책적 사안의 사실 여부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자가 광범위할 수 있는바,

이를 개인 간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 판단·중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권리침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특정되어 있고, 권리침해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
- 반면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영향을 받는 자가 광범위하고,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사실과의 유사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함.
- 이처럼 권리침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성격이 다름에도 양자에 관한 분쟁을 모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분쟁조정에 효과적일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동일하게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이 위원회의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